

## 장애학생 지원 지침

제정일 : 2008. 8. 25.

**제1조 (목적)** 이 지침은 서울신학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.

**제3조 (지원대상자 선정)**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을 대상자로 선정한다.

-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등록장애인
- ②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한 특수교육대상자
- ③ 각 항(1호 또는 2호)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부서에 등록을 필한 자(대학원생 포함). 단,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해당부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인 경우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**제4조 (등록)** 장애학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.

- ① 해당부서에 비치된 학생생활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한다.
- ② 해당부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도우미지원요청서를 작성한다.

**제5조 (지원의 종류 및 범위)**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① 학습지원
  - 상대평가대상에서 제외
  - 수강 신청한 과목 담당교수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안내
  - 수강 신청한 과목의 출석부에 장애학생 표시
- ② 이동 지원
  - 학습을 위한 이동과 관련하여 지원하되 신변처리는 기본적인 지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.
- ③ 개강 후 2주 동안은 도우미 모집 및 배치기간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다.

**제6조 (지원의 제한사항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우미 배치를 받은 장애학생은 해당 일로부터 1개월 동안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.

- ① 도우미를 배치받고 해당 수업시간에 연락 없이 2회 이상 결석한 자
- ② 배치된 도우미에게 학습이외의 과도한 지원을 강요하는 자
- ③ 특별한 사유 없이 도우미 신청 기간 내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자
- ④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
- ⑤ 해당부서 담당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도우미를 배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배치된 도우미를 거부한 자

- ⑥ 학습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지원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해당부서장이 판단하는 자

**제7조** (지원대상자의 의무)

- ① 신상정보 제공 의무(학생생활신상카드 작성)  
② 서비스 신청의 의무(도우미지원요청서 작성)

**제8조**(의견수렴) 학기별 1회 이상 학생대표와 장애학생 간담회를 실시한다.

[본조신설 2018.1.24.]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 
②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운영하며, 규정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.<개정 2011. 8. 26.>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